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17

발의연월일 : 2026. 7. 13.

발 의 자 : 박상혁・김한규・김동아 문금주・이인영・정준호 이정문・진선미・백혜련 강경숙・허 영・한민수 김주영・김영환・박균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들어 사이버상의 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고 이전 예방 체계 구축과 사후 대응 체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수준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ISMS 제도 정비 및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정작 정보침

해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은 ISMS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하여 보안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여 책임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제47조의6제1항 및 제48조의4제5항・제7항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정보통신망의 규모,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7조의6제1항 중 “예산의”를 “2천만원의”로 한다.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4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침해사고의 징후를 발견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즉시 보전하여야 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가 서버의 재설치·폐기 등 제5항에 따라 보전해야할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사회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해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1항제13호의2 중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을 “제48조의4제5항을”로,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를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생 략)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정보통신망의 규모,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 ---------- ---------- ----------

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천만원의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④ (생 략)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침해사고의 징후를 발견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즉시 보전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가 서버의 재설치·폐기 등 제5항

	에 따라 보전해야할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사회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해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 ---------- ---------- ---------- ----------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13의2. 제48조의4제5항을-----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